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 소유권과 기본소득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토머스 페인(1737~1809)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기 ‘대서양 혁명들’의 시기에 가장 유명한 정치 저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자 현대 정치의 보수-진보 논쟁에서도 끊임없이 준거점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다.¹⁾

페인은 미국 독립 선언의 연료 역할을 한 『상식』(1776)과 연작 “아메리카의 위기”(1776~1783)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면서 쓴 『인권』(1791, 1792)을 통해 현대 정치의 기본원칙과 구성을 열렬히 옹호한다. 그것은 공화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였다. 하지만 페인은 정치적 급진파에 머물지 않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흥 속에서 드러난 사회경제적 문제, 즉 빈곤의 존속과 불평등의 확대에 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상의 진화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 이외에 “사회 보장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한다.²⁾ 또한 21세기 들어 부상하고 있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정당성과 의미를 제대로 논구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³⁾

이런 면모를 잘 드러내는 게 그의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이라 불리는 『토지 정의』이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오랫동안 잊혀진 텍스트였다. 그건 아마 급진 공화주의자로서의 그의 면모가 여전히 강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마 더 중요하게는 그 텍스트에 담긴 그의 주장이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와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래 전 한 유토피아주의자의 지적 놀이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다음 『토지 정의』의 귀환이 있었다. 그건 현대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사상의 궤적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속에서 『토지 정의』는 모두에게 속

1) 유벌 레빈,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위대한 논쟁』, 에코리브르, 2016.

2) Whitfield J. Bell, The Bust of Thomas Paine, 1974, 16. Bernard Vincent, The Transatlantic Republican: Thomas Paine and the Age of Revolution, 2005, 124에서 재인용.

3) 안효상, “서양의 기본소득 논의의 궤적과 전망,” 『역사비평』, 120호, 2017

하는 자연적 부가 있다는 것, 이를 모두에게 적절하게 방식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밑바탕에 깔린 주요한 원칙과 함의를 최초로 밝혀낸 ‘위대한 팸플릿’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문명과 그 불만

토머스 페인은 『토지 정의』를 1795년에서 1796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프랑스에서 썼다. 이때는 자코뱅의 테러 독재가 끝나고 혁명의 부르주아적 성격이 다시 강화된 총재 정부 시기였다. 페인이 팸플릿을 쓴 직접적 배경은 총재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1795년 헌법이었다. 그가 보기에 이 헌법에는 중요한 결점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동등한 선거권이 아니라 재산 자격에 기초한 선거권이었다. 다시 말해 토지세나 동산 재산세를 내는 사람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었던 것이다. 공화주의자인 페인이 보기에 이런 재산 자격 참정권은 “선거의 존엄함”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따라서 수정되어야 했다. 또 다른 배경은 이 시기에 심각해진 경제위기와 불평등이었다. 계속되는 전쟁, 심각한 인플레이션, 농업 위기, 국유 재산 매각 등으로 민중의 삶은 극도로 어려워졌다.

하지만 페인은 『토지 정의』의 출판을 미루었는데, 당시 전쟁 중이어서 그가 제안하는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797년에 『토지 정의』를 출판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자신의 이전 저작인 『이성의 시대』 2판을 비판한 란다프의 주교 왓슨에게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 주교는 어떤 설교에서 “신이 부자와 빈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에 맞서 페인은 “신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뿐이다. 신은 그들에게 지구를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반박한다(62).⁴⁾ 이는 페인의 평등주의적 시각을 당시의 언어로 온전히 드러낸다.

급진적 공화주의자인 페인이 만인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토지 정의』의 고유한 점은 이를 사회경제적 권리와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1795년 프랑스 헌법의 재산 자격 선거제 그리고 당시의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을 보면서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재산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토지 정의』의 또 다른 고유한 점은 재산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경제적 권리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미 페인은 1792년에 출판한 『인권』 2부의 마지막 장에서 빈민 구제, 연금, 빈민 교육, 산모 수당 등등 일련의 복지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별다른 근거나 원칙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권』 2부는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앞부분과 광범위한 복지 제공을 주장하는 뒷부분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저술이다. 이에 반해 『토지 정의』는 대지에 대한 자연적 소유권에 기초하여 모두에게 그 몫을 분배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4) 『토지 정의』의 인용은 월간 『시대』 50호(2017년 7-8월)에 실린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와 해설에서 가져왔으며, 괄호 안에 쪽수만 표시했다.

사실 페인은 당시 확대되어 가던 상업을 예찬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는 ‘사회’ 자체가 대체로 교환 및 상업 관계로 구성된 것으로 바라보았고, 이때 상업은 상호성, 호혜성, 협동의 이점을 발휘하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힘이였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가 수렵채집, 목축, 농업 사회의 단계를 거쳐 상업 사회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명의 발전은 그 이면, 즉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을 낳았다는 것이다. 페인은 현재의 문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휘황찬란한 겉모습에 현혹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도의 비참함에 충격을 받는다. 이런 문명의 두 모습 모두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른바 문명화된 나라들에서 가장 풍요로운 인간과 가장 비참한 인간을 찾아볼 수 있다(63)

그 이유는 토지의 독점적 소유 때문이다. 우선 페인은 자연 상태에서 토지는 “인류의 공동재산”이었으며, [경작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공동재산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어 다음과 같이 원초적 공산주의 상태를 가정한다(64).

원래 토지 소유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인간이 대지를 만들지 않았으며, 인간에게 대지를 점유할 자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의 일부를 영원히 자신의 재산으로 주장할 권리는 없었다. 대지의 창조자도 최초의 권리 부여 행위를 해야 하는 토지 등기소를 열지 않았다(65~66).

토지 소유는 경작과 함께 시작되었다. “개량이 이루어지는 대지 자체와 경작에 의한 개량을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인의 공동의 권리가 개인의 경작된 권리와 혼동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이 토지 소유를 낳았다. 그럼에도 페인은 “두 권리가 구별되는 종류의 권리이며, 세계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라고 말한다(65). 이어서 페인은 이렇게 말한다.

대지 자체가 아니라 개량된 가치만이 개인적 소유라는 것이 진실이다. 그러므로 경작된 토지의 모든 소유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기초 지대(ground-rent) - 나는 이런 생각을 표현하는 더 나은 용어를 알지 못한다 - 를 공동체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제안된 기금은 바로 이 기초 지대에서 나온다(65)

페인이 말한 계획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상속세 10퍼센트를 거두어 기금을 만든 다음 21세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15파운드 스텔링을 지급하고, 50세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매년 10파운드 스텔링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토머스 페인은 원형적인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의 주창자가 되었다.

사적 소유[재산]의 근거와 한계 혹은 공동의 소유

토머스 페인도 참가했던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새로운 사회의 원칙이자 방향으로 설정했고, 우리는 여전히 그 그늘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더 중요한 문제는 페인도 인식했듯이 소유[재산]의 문제였고, 이를 둘러싼 입장은 현대 정치 이념의 스펙트럼을 구성했다. 자유주의는 소유의 절대성을 주장했고, 이에 기초해서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옹호했다. 후일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흐름은 소유가 인권과 문명의 토대이긴 하지만 공공성과 다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정도 제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지금은 사실상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공산주의는 소유의 불가능성(혹은 부당성)을 말했고, 이에 따라 공동 소유, 공동 노동, 공동 향유를 제안했다.⁵⁾

토머스 페인의 입장은 위에서 말한 세 흐름과 겹치면서도 미묘하게 달랐다. 앞서 본 것처럼 페인의 고유한 입장은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를 구분하고, 자연적 소유는 공동의 권리로, 인공적 소유는 개인의 권리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적 소유가 성립한 이후에도 공동의 소유에 해당하는 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페인의 입장은 사실 사적 소유의 성립에 관한 당대의 논변과 대결하면서 나온 것이다. 사적 소유는 그 이전에 공동의 소유, 혹은 공유지commons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페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대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적 소유가 성립했을 때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변은 세 가지가 있다. 우선 동의consent 이론이 있다. 푸펜도르프는 “지구상의 모든 재산”을 “모든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평화, 안정, 훌륭한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최소한 암묵적 동의”가 사람들 사이에 필요하다고 보았다.⁶⁾

두 번째 입장은 그로티우스는 ‘선점’ 이론이다. 푸펜도르프는 대지의 대한 공동의 소유로부터 모두가 이를 취득해서 소유할 수 있는 ‘긍정적’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로티우스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이를 취득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공동의 소유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는 ‘부정적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로티우스는 사적 소유를 키케로의 ‘선점’ 이론에 기대어 정당화한다. 키케로가 드는 예는 극장의 빈 좌석이다. 자리가 비어 있다면 누구나 그 자리를 차지할 자유가 있으며, 부당하게 거기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로티우스는 이 논리를 사적 소유에 적용해서 공동의 소유란 것은 실제로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빈 좌석)이며, 이 세계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⁷⁾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는 세 번째 논변은 유명한 로크의 ‘취득의 노동 이론’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자신의 노동을 자연 자원에 혼합해서 나온 것에 대해 배타적인 사적

5) 알베르 소블, “현대사에서의 프랑스 혁명,” 민석홍 편, 『프랑스 혁명사론』, 까치, 1988.

6) S. Pufendorf, On the Duty of Man and Citizen, ed. James Tully, 1991, 84-85.

7) H.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ed. R. Tuck, 2005, 2: 420-21.

소유권이 있다는 게 로크의 논변이다. 물론 노동을 혼합했다고 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어떤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로버트 노직의 유명한 반론이 있긴 하지만, 로크의 논변은 여전히 강력한 사적 소유의 정당화 근거이다. 여기서 덧붙여야 할 것은 로크 자신도 노동 자체만큼이나 노동을 통한 결과인 개량도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는 것이다.⁸⁾

노동의 혼합 및 노동을 통한 개량이라는 로크의 논변은 이후 노동만이 가치를 부여한다는 ‘노동가치이론’으로 확립되어 근대 정치경제학의 근거이자 사회 구성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페인은 노동을 통한 개량이라는 로크의 논변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개량을 통한 사적 소유의 성립 이후에도 공동의 소유에 대한 모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로크와 갈라진다. 이 지점에서 사적 소유의 절대성은 사라진다.

페인에게서 더 흥미로운 점은 자연적 소유만이 아니라 인공적 소유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할 때 드는 논거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개인 재산[동산]은 사회의 효과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토지를 만들어 내는 게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도움 없이 개인이 개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개인을 사회에서 분리시킨 다음 그에게 섬이나 대륙을 준다 하더라도 그는 개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목적과 연결된 수단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수단이 없다면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손으로 생산한 것을 넘어서는 모든 개인 재산의 축적은 그가 사회에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70).

페인의 이런 주장은 로크가 가정한 것과 달리 고립된 개인이 자신의 노동으로 뭔가를 생산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또한 사적 소유의 절대성을 소멸시킨다. 이런 페인의 생각은 19세기 프루동의 ‘사회적 힘’과 맑스의 ‘사회적 힘’으로 이어지며, 오늘날에는 인공적 공유부라는 사고까지 나아갔다.

더 나아가 페인은 노동 착취 이론이라고 할만한 것의 단초까지 제시한다.

만약 우리가 사태를 상세하게 살필 경우 개인 재산의 축적은 많은 경우에 그것을 생산한 노동에 너무 적게 지불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일한 사람은 나이 들어 고통 속에 죽고 사용자는 풍요로워진다는 것이다(71).

아직 ‘산 노동’의 고용을 통한 ‘잉여 가치’의 생산이라는 인식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페인의 이런 주장은 당시 발흥하던 자본주의의 논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 존 로크, 『통치론』 가치, 1996. 5장 ‘소유권에 관하여.’

나오며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이지만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토지 정의』는 페인의 사상의 진화 속에서 현대 사회의 위기에 해법을 모색할 때 중요한 준거점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 위기는 대부분 인류 공동의 위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의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의 노력을 위해서는 사회의 공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것이 우리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를 구분하는 페인의 소유 이론, 부의 생산이 사회적 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사회적, 집합적 힘에 대한 이해, 원형적인 착취 이론 등은 지대 추구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오늘날 어찌면 훨씬 더 큰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